

## OECD 主要國家의 保險障壁에 관한 研究

尹永鎮\*

### 〈目次〉

I. 머리말	
II. OECD 主要國家의 保險障壁	3.2 獨逸의 保險去來障壁
1. 美國의 保險去來障壁	3.3 프랑스의 保險去來障壁
2. 日本의 保險去來障壁	III. 맺음말
3. EU의 保險去來障壁	參考文獻
3.1 英國의 保險去來障壁	Abstract

### I. 머리말

최근 전세계의 보험분야는 격심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가 이루어진 미국을 제외한 일본과 EU의 변화가 특히 더하다. 더구나 최근 몇년사이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는 자국의 보험관련 규제를 OECD에 맞추기 위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1994년 7월 시행된 EU 제3보험지침은 EU域內國家의 보험산업의 自由化와 規制緩和를 예정하고 있으며, EU의 어디에서나 활동하는 자국의 감독만 받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험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세계보험시장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보험선진국이 세계보험

\* 東明專門大學 保險經營科 助教授

시장을 總收入保險料面에서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총수입보험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작년말 OECD의 가입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國內外 보험 시장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對內的으로는 ENT제도의 폐지, 브로커시장의 개방 및 Cross-Border의 보험거래의 허용등으로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보험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화에 따른 內國制度下에서의 외국사와의 경쟁은 여러측면에서 내부적인 대응 및 제도에 의하여 어느정도의 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화 추세에 따른 우리 보험산업도 對外的으로 눈을 돌려야될 때가 되었고, 外國制度下에로의 진출을 위한 研究가 있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세계주요선진국의 保險去來障壁인 慣行이나 規制狀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험기업이 보험선진국으로의 진출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Ⅱ. OECD 主要國家의 保險障壁

### 1. 美國의 保險去來 障壁

일반적으로 미국보험시장에 진출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非美國系 保險業者는 설립의 자유를 포함한 市場接近 및 業務上의 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를 부여받고 있다.<sup>1)</sup> 즉 이들은 미국계 보험회사와 같이 별도의 子會社(Subsidiary)를 설립하거나 既存會社를 매수할 수 있으며, 미국내 支店(branch)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外國保險業者(alien insurer)도 본국에서 적법하게 면허를 받아 설립되었고 성공적으로 수년간 운영해온 기록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미국내에서 ‘認定(admit)’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활동의 대우를 보더라도 新保險商品의 취급인가, 運轉資本의 증액요구, 投資對象에 대한 규제 등에 있어 국내보험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험산업에 대한 法律上 또는 實務上의 規制는 연방정부보다 州政附에 의해 實施되어 왔다<sup>2)</sup>. 미국에는 55개의 保險法(insurance law, insurance code)과

1)李長榮, 金融서비스 關聯障壁,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7. PP.102~103.

55개의 保險廳 (insurance department)이 있는데, 현재는 1945년 公法 15 (public law 15, 別名 McCarran-Ferguson act)에 의해 기본적으로 州에 의한 規制가 實行되고 있다<sup>3)</sup>.

## 1.1 市場接近에 대한 障壁 (Market Access Barriers)

### 1.1.1 規制의 對象이 되는 事業主體

뉴욕주보험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조직, 단체를 제외하고, 어떠한 개인, 단체도 州의 보험면허를 취득하면 同州에서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뉴욕주보험법 제1102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체의 법적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뉴욕주를 비롯한 28개주에서는 州외의 정부 혹은 그밖의 어떠한 정부라도 정부가 소유·지배하는 州內外의 保險會社 면허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4)</sup>.

이러한 규정은 국영보험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프랑스 등의 국가에게는 주요한 시장접근장벽이 되고 있다<sup>5)</sup>.

이렇게 정부소유업체에 대해 보험업인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정부는 보험업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불공정하게 정부에 의해 보조금지원을 받는 보험회사의 진출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6)</sup>.

또한 보험회사 자산의 소재위치나 보험규제의 질, 또 외국정부와 외교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우려한 때문이라고 한다<sup>7)</sup>.

### 1.1.2 保險會社의 設立上 및 免許의 取得上 規制

뉴욕주보험법은 日本, 유럽 또는 美國의 他州와 같이 뉴욕주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보험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免許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뉴욕주 보

2)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1.

3) 미국에는 50개주와 워싱턴 D.C. 및 괌,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칸사모아, 비진군도의 4개 속령, 계 55개의 보험청이 있다.

4)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16.

5)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P. 16~18. 참조

6) 李長榮, 前掲書 PP. 103~105.

7) U.S. Treasury, 「National Treatment Study 1990」, P. 71. 참조

협법 제1102조(a)), 뉴욕주의 법률에 기초해서 설립된 보험회사(domestic insurer)와 미국이외의 외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alien insurer)간에는 면허에 관한 취급이 약간 다르며 면허의 유효기간도 domestic insurer가 무기한인데 대해 foreign 및 alien insurer의 경우는 1년간, 면허발행일 직후의 6월 30일로써 유효기간의 종료되며, 그후는 매년 면허증의 갱신이 필요하다<sup>8)</sup> (뉴욕주 보험법 제1103조). 단, 동법 제307조에 따른 연차계산서의 제출로써 면허의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他州 및 外國의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州內의 보험사업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종류의 보험사업(각 종류조합의 보험사업을 포함)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으며, 뉴욕주에서 보험회사에 인접되고 있는 부수업무 이외의 他業을 미국내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면허를 주지 않는다.

또한 뉴욕주 보험법 제1112조에는 타주 및 외국보험사업자와의 상호주의 조항 (Reciprocal provisions)이 있어서 州內보험사업자가 타주 또는 외국으로 진출할 경우, 그 진출한 곳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는 그 타주 혹은 외국으로부터 뉴욕주에 진출해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해 報復措置(면허의 취소)를 취하고 있다.<sup>9)</sup>

### 1.1.3 財務的 要件上的 規制

州外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보·생보의 어느쪽이라도, 州內보험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잉여금의 額과 같다<sup>10)</sup> (뉴욕주보험법 제1106조, 제4103조).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해서도 同額이지만 法定最低納入資本金의 150%(주식회사의 경우) 또는 최저계약자 잉여금(상호회사의 경우)을 상회하는 액수를 신탁잉여금(trusted surplus)으로 신탁할 필요가 있다 (뉴욕주보험법 제1312조, 제1320조, 제4103(b)(c)조, 제 4108조).

特別保證金(special deposit requirement : 供託金)의 경우에도 州外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생보·손보 모두 州內보험사업에 대한 공탁금의 액수와 같으나,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州內보험사업자에 요구되는 납입자본금의 150% 상당액 이상의 신탁자금을

8)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21.

9)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21.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험업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

10)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P. 26~27.

합중국내에서 보유하든가, 보험감독관에게 공탁하는 일이 필요하다. 단 공탁금액은 법정 예탁금으로서 한 종목의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50만달러, 두종목 이상의 보험사업에 대해서는 州內보험주식회사에 대해서 요구되는 자본금상당액이나 100만달러의 어느쪽이든 적은 액수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부족분은 공탁자산으로 보유하게 된다<sup>11)</sup> (뉴욕주보험법 제1320조).

결국 외국보험사업자도 州內보험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sup>12)</sup>

타주보험사업자와 같이 외국보험사업자는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면허를 받고 있을 것, 어떤주에서는 그 본국에서 일정기간 수익을 내는 영업을 하고 있던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담보력(지급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州內, 他州보험사업자보다 다액의 공탁금을 신탁계약으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46州에서는 외국보험사업자에게 州內보험사업자와 같은 자본금·잉여금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금·잉여금의 요건과 공탁금의 요건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前者는 회사전반의 건전성에 관한 것이며, 後者는 회사의 경영이 파탄된 경우, 州民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재산을 바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보험사업자에 있어 주마다 보험법이 다르고 약관, 보험요율, 감독청의 검사방법이 매우 다양<sup>13)</sup> 하기 때문에 각주별로 면허를 취득할 때의 지연이나 과대한 경비등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sup>14)</sup>. 그러므로 미국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보험사업자는 다른 참여방법, 예를들면 재보험거래만을 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州內보험사업자를 취득하는 것 등을 고려하도록 권장되는 일이 많다.

## 1.2 營業活動上の 制限

### 1.2.1 保險引受限度 (underwriting limit) 計算方式上の 差別

대부분의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리스크(risk) 1건에 대해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한도를 회사이익금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그 보험회사의 '잉여금에서 재보험청구권을 除한 금액'(surplus net of reinsurance claims)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11)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27.

12)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28.

13) 李長榮, 前掲書, P.104.

14)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28.

있는데, 미국내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상기한 잉여금의 계산에 있어 미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net assets retained)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인수한도가 더 낮게 계산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인수능력 제한은 명목상 내국민 대우는 부여되고 있지만 사실상 경쟁능력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제한의 배경에 대해 미국정부의 입장은 해외에 위치한 보험회사의 순자산은 분쟁발생시 訴求가 곤란하고 어렵기 때문이며,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제(prudential regulation)의 일종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외국보험회사의 잉여금에 관한 정보를 보험당국이 정확히 입수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정보모집에 관한 행정적 부담만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동제한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국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추세에 상반되는 것으로 완화되어야 할 제한으로 지적되고 있다.

### 1.2.2 再保險事業에 대한 監督規制

재보험사업자에 대한 미국 각 주의 규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원수보험사업자보다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sup>16)</sup>.

州保險廳은 그 주에 대표자가 없는 州內의 원수보험사업자와 거래하는 타주 또는 외국의 재보험자에게 규제력을 발휘할수 없기 때문에 재보험에 관한 컨트롤은 원수보험사업자를 중개로 간접적으로 행해진다. 원수보험사업자에게 그 주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그 주의 자산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재보험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준비금 적립에 재보험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등으로 재보험사업자를 컨트롤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의 재보험자는 적어도 本據州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재무상 요건을 만족시켜 왔으며 외국재보험사업자는 미국내에서 신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었다. 무면허 외국 재보험사업자에 의한 재보험 인수도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큰 재보험 전문회사는 미국에서 면허를 받고 있다.

그러나 Nevada주에서는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들을 경우 오직 州內에 설립된 보험사

15) 李長榮, 前掲書, PP.105~106.

16)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97.

를 이용<sup>17)</sup> 해야 하며, 25개주에서는 국내 혹은 외국법인이 정부소유이거나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 영업활동이 금지되고 있다.

### 1.2.3 非免許保險事業者의 監督規制

미국의 각 주는 해당주에서 비면허보험사업자(non-admitted insurer)에게는 원칙적으로 州內에서의 원보험 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양해상보험 및 주내에서의 인가보험자에게 부보할 수 없는 보험종목이나 州內의 인가보험자의 인수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Excess Line 혹은 Surplus Line 이라하여 州內에 면허를 가진 Broker를 경유하여 타주 또는 타국의 보험자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18)</sup>.

이것은 州民을 될 수 있는한 보호하려는 필요성과 同州民중에서도 특히,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巨額物件이나 특수 risks 등에 대한 州內의 면허 보험사업자 시장에서는 필요한 보험cover를 받지 못할 때, 州外의 넓은 경쟁적시장(비면허보험사업자)에게 access 할 수 있게 하려는 필요성과의 타협<sup>19)</sup>인 것이다.

많은 주에서 주보험법의 surplus line에 대한 규제로, 특별한 면허를 갖는 surplus line broker가 증개하면 州內外의 비면허회사와 계약을 해도 좋다고 하고 있다. 그 broker는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시장(regular market)에서는 보험카바를 입수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보험료세를 지급하는 책임을 지고, 재무상황도 건전한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어떤주에서는 surplus line은 보험청 장관이 지정한 보험회사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NAIC의 Non-admitted Information Office에 의한 평가를 존중하고 있다. 同office는 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미국에서의 정당한 신탁업무, 회사의 평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발표하고 있다. 비면허 내지 surplus 시장(non-admitted or surplus lines market)은 모두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면허회사와는 다른 기준과 방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것이며, 비면허 회사에 대한 규제는 점점 엄하게 되어가고 있다<sup>20)</sup>.

17) 禹營洙, 서비스 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對外經濟政策開發研究院, 1994. 12. P.67.

18) 보험개발원, 海上積荷保險 Cross-Border 許容 以後의 效果分析 및 向後對應戰略 Insurance Forum 제12호, 1996. P.18.

19)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98.

20)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98.

#### 1.2.4 其他 關聯障壁

1986년 제정된 美國國稅廳規則(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하면 상해보험이나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Indemnity 채권에 4%의 국내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외국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의료보험, 연금계약(annuity contract)에는 1%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의 제4371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특정한 몇종류의 재보험계약시 지불되는 프리미엄에 1%의 특별소비세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sup>21)</sup>.

또한 미국보험시장에서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서 소비자보호운동(consumerism)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경영에 대한 광범위한公表(dis-closure)가 실행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disclosure는 보험회사의 기업으로서의 재무상황에 대한 disclosure와 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한 disclosure, 즉 상품정보에 관한 disclosure, 두가지가 있다.

前者의 경우, 뉴욕주에서 활동하는 모든 면허보험회사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한 曆年(1월 1일~12월 31일)의 연차계산서를 다음해 3월 1일까지 주보험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뉴욕주보험법 제307조), 이 연차계산서에 대해서는 보험감독관 사무소 및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공개열람하게 한다(뉴욕주보험법 제307조(b)(1)).

또한 보험회사는 株主에게 연차계산서의 사본을 送付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는 주보험청에 대한 연차계산서의 제출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 외부독립 감사인들에게도 각각 목적에 부합하는 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험회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주보험청이 실시한 보험회사 검사에 관한 보고서는 공개열람에 제공할 것을 주보험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다<sup>22)</sup>(뉴욕주보험법 제312조).

後者の 경우, 뉴욕주에서는 생명보험, 연금 및 기금의 적립협정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이들 보험의 청약시, 최근 buyer's guide 및 그 밖의 예비정보를 보험계약청약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뉴욕주보험법 제3209조(c)), 그 고객에 일정한 disclosure가 법정화되어 있는데 반해 손해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

21) 李長榮, 前掲書, P.106.

22)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93.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지향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을 중심으로한 손해보험에 대해서 주보험청은 각 손해보험회사의 적용보험료를 비교한 소책자(consumers shopping guide)를 작성해서 손해보험 구입자에게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disclosure나 상품정보에 대한 disclosure는 차별적 규제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sup>23)</sup>.

## 2. 日本의 保險去來 障壁

日本은 保險業法이 개정되어 1996년부터 시행(이하 新保險業法이라 칭함)법률에 의하여 보험업이 규제, 감독되고 있으나 일본 대장성이 수시로 발행하는 通達과 같은 규칙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신보험업법은 별도로 제9장 외국 보험사업자에서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제, 감독에 관한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공식적 법규에는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거의 보이지 않으나, 비공식적인 행정지침이나 관행의 측면에서 아직도 시장접근의 허용이나 업무활동면에서 다수의 제한이 존재<sup>24)</sup>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장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2.1 市場接近上의 制限

#### 2.1.1 設立認可上의 制限

日本에서 외국보험업자는 일본에 지점 등을 설치하여 대장대신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보험업을 당해 지점 등에서 행할 수 있는데,<sup>25)</sup> 日本 新保險業法 第 142條 ①日本에서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는 사람 또는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 또는 일본국적을 가지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계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내에서 체결해야 한다<sup>26)</sup>.

그러나 일본이 지점들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는 政令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며<sup>27)</sup>, 일본에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보험사업

23)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94.

24) 李長榮 前掲書P. 62.

25) 日本 新保險業法 第 142條 ①

26) 日本 新保險業法 第 142條 ⑥

자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대장대산의 허가<sup>28)</sup>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2.1.2 供託金에 의한 規制

일본에서 외국보험사업자들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할 때 政令에서 정하는 액수의 금전을 일본내의 공탁소에 공탁<sup>29)</sup> 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장대산이 일본의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외국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일본안에서 보험업을 개시하기 전에 政令에서 정하는 액수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금전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sup>30)</sup>고 규정하고 있어, 공탁금의무가 일본내의 납입자본금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적으로는 내국인 대우 원칙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외국보험회사가 내는 공탁금의 액수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2억엔(조건부외국생명보험회사등은 천만엔)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 190조 ②항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상당히 증가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상 적용에 따라서는 교묘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2.1.3 既存保險會社 讓受上の 規制

일본에서 외국보험회사는 일본보험회사의 지분중 25% 이하만 소유할 수 있게되어 지분참여를 통한 진출에는 한계가 있다<sup>31)</sup>. 일본보험업법 제211조는 동법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는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장대산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sup>32)</sup>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양도, 양수는 이루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 보험사의 인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7) 日本 新保險業法 第 142條 ①

28) 日本 新保險業法 第 142條 ②

29) 日本 新保險業法 第 142條 ①

30) 日本 新保險業法 第 142條 ②

31) 李長榮, 前掲書 P. 63.

32) 日本 新保險業法 第 142條

## 2.2 業務活動上의 規制

일본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는 배타적인 금융거래관행이나 보험중 개인제도의 미발달 등 보험판매 활동상 많은 장벽에 부딪혀 있는데 이는 특히 생명보험분야에 더욱 심하다<sup>33)</sup>.

### 2.2.1 保險仲介業에 관한 規制

한국과 일본은 보험산업 자체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판매 조직도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외무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속대리점형태를 가미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는 대리점 중심체제와 직급조직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 신보험업법은 「保險仲介人」이란 보험계약체결의 매개로서 생명보험모집인 및 손해보험모집인이 그 소속보험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매개 이외의 것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sup>34)</sup>고 규정하고, 보험중개인은 대장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sup>35)</sup>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보험중개인 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도 없다. 그러나 지역적 연고를 찾고 있지 않은 외국보험회사가 일본 보험판매조직과 망을 구축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일본 특유의 '기업계열화' 관행의 존재로 인해 기업고객에 대해서도 외국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증권을 판매하기가 어렵다<sup>36)</sup>고 볼 수 있다.

### 2.2.2 保險資産運用上의 規制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보험법규 뿐만 아니라 일반경제법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자산운영관련 규제법규로서는 保險業法, 保險業法 施行令, 保險業法 施行規則 및 各種 行政規制로 구분된다.<sup>37)</sup>

OECD 회원국의 생명보험 자산운용규제를 보면 대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대출의 비중이 높고 규제가 약한편이라고 볼 수 있

33) 李長榮, 前掲書 P. 64.

34) 日本新保險業法 第 2 條 ⑬

35) 日本新保險業法 第 268 條

36) 李長榮, 前掲書 P. 64.

37) 保險開發院, 主要國의 保險資産運用 規制 및 現況, 調查研究資料 NO. 46, 1996. 1. P. 29.

으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에 대한 한도규제도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보다는 낮은 편이다<sup>38)</sup>.

### 2.2.3 Cross-Border 保險서비스에 대한 規制

일본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는 일본에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는 자 또는 일본에 소재하는 재산 또는 일본국적을 가진 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한 보험계약 (政令에서 정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sup>39)</sup>고 규정하고 있어 Cross-Border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령에서 보험계약으로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가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sup>40)</sup>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재보험계약, 국제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일본국적의 선박 및 이에 따른 국제간의 운송중 화물 및 이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 또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 상업항공에 사용되는 일본국적의 항공기 및 이에따른 국제간에 운송중의 화물 및 이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 또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 마지막으로 대장성령에서 정하는 보험계약<sup>41)</sup>으로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리고 당해 쏘아올린 운송화물 및 당해화물을 운송하는 수단 및 이것들에서 발생하는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 일본에 소재하는 화물이고 국제간에 운송중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 해외여행기간에 해외여행자가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및 이것들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는 사망 및 당해 해외여행자의 수하물과 같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본에 지점들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보험업자등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Cross-Border 거래의 범위가 앞에서 언급한 몇가지고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범위제한은 UR의 서비스일반협정 (GATS)<sup>42)</sup>에 정하고 있는 브로커나 대리점과 보험중개업(insurance intermediation), 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그리고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services auxiliary to insurance)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극히 제약이 많다고 볼 수 있다.

38) 保險開發院, 主要國의 保險資産運用 規制 및 現況, 調査研究資料 NO. 46, 1996. 1. P. 31

39) 日本 新保險業法 第 186條 ①項

40) 日本 新保險業法 施行令 第 19條

41) 日本 新保險業法 施行規則 第 116條

42) GATT, GATS, MFN/FA II-A1 B, P. 30 참조.

### 3. EU의 保險去來 障壁

EU는 보험시장 통합의 진전으로 EU域內 보험사업자간에는 장벽이 거의 없다. EU 보험시장 통합의 근본목표<sup>43)</sup>가 첫째 EU역내의 어떠한 회원국내에서 인가된 보험회사와도 자유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保險契約締結의 自由 (Freedom for Policyholders)보장, 둘째 회원국의 어느 지역에서 보험사업의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라 할지라도 EU역내의 회원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로운 영업활동 및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營業의 自由(Freedom for Insurers)보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의 지침이 전체 회원국에 대해 효력이 발휘되지만, EU 각국의 보험법규는 제3국 보험자의 지점이나 대리점 설치시는 회원국 각각의 인가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EU 국가중 영국과 독일 및 프랑스의 保險監督法을 중심으로 제3국의 규제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3.1 英國의 保險去來 障壁

영국에 있어서의 보험규제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하여 일관되게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재무상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sup>44)</sup>을 택하고 있는데, 주무관청은 이를 위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계산서, 대차대조표, 요약표, 보고서 및 보험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타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주무관청도 '82年保險會社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에 대한 간섭권한을 행사한다(§37(5)(b)).

- a) 면허시 또는 면허일로부터 5년이내
- b) 회계감리역(controller)의 변경 또는 변경일로부터 5년이내
- c) 보험사업자가 법류에 따른 의무를 懈怠한 경우
- d) 재보험처리가 부적당한 경우
- e) 사업방법서에 정한 내용을 벗어난 행위가 있는 경우

43) 保險開發院 海上積荷保險 Cross-Border 許容 以後의 效果分析 및 向後 對應戰略, Insurance Forum 제 12호, 1996. P.19.

44)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 海外調査報告書 イギリス編, 平成元年 P 3

- f) 보험사업자의 임원 또는 지배인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우
- g) 보험사업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거나 또는 생보사업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타당한 기대에 부응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가 요망되는 경우

### 3.1.1 市場接近에 대한 規制

영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영국에서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82년 보험회사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며 또한 일반회사와 같이 회사등기를 하여야 한다<sup>45)</sup>. 다만 해외 직접부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분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EU 역외의 본점이 있는 신청자의 法的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9).

a) 법인인 동시에 그 법인이 설립된 나라의 법률에 따라 생명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고 있을 것.

b) 총대리인을 임명할 것

c) 총대리인, 주된 대리인, 임원, 회계감사, 영국 국내보험사업의 책임자 및 지배인이 각기 그 직책에 합당한 적격자일 것.

재무적인 요건도 면허의 조건으로 특별히 최저자본금 또는 기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EU역외에 본점이 있는 보험사업자가 영국에서 원보험 및 재보험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국에서 행하는 보험사업에 관하여 최저 guaranty fund<sup>46)</sup>의 1/2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공탁해야만 한다. 다만, 재보험사업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공탁할 필요가 없다.

45)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P.

46) 최저 guaranty fund에 대해서는 EU법제에 근거하여 계산 또는 확인하는 사항인데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된다. guaranty fund는 solvency margin의 1/3인데 다음과 같으나 다만 상호 base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75%로 하고 있다.

· 손해보험사업(부칙 2의 사업업종)

10, 11, 12, 14 또는 15

400,000 EUC

1, 2, 3, 4, 5, 6, 7, 8, 16 또는 18

300,000 EUC

9 또는 17

200,000 EUC

· 생명보험사업

800,000 EUC

3.1.2 業務活動上の 監督

영국의 주무관청은 주로 보험사업자로부터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고, 그것들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감독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사업을 행함에 있어서의 재무적 요건의 종류와 금액<sup>47)</sup>은 면허취득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solvency margin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사업자의 종류	Solvency margin을 검증하는 단위
영국에 본점이 있는 보험사업자	world wide business
영국에 본점이 없는 보험사업자로서 영국내 영업이 재보험에 한하는 경우	world wide business
EC에 본점이 없는 보험사업자	
① 영국내 영업이 원보험인 경우	world wide business 및 영국내의
② 영국내 영업이 원보험인 경우,	영업부분
他EU역내의 주무관청의 합의로	world wide business 및 EC내의
영국에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업부분

한편 주무관청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간섭권한은 '82年法の 제37조~제45조에 의거하는데, 이러한 간섭권한의 행사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험사업자에게 가할수 있는 규제는 다음 3가지 종류가 있다<sup>48)</sup> (§37(6), §45).

㉠ 투자형태 또는 收入保險料의 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사업규모와 사업운영을 통제할 수 있다.

㉡ 통상보다 빈번하게 보고를 청구하여 그것이 재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주무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한행사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47) 日本損害保險協會, 前掲書, PP.15~16.

48) 日本損害保險協會 開發室 前掲書, PP. 35.

### 3.2 獨逸의 保險去來 障壁

독일감독법의 기본원칙은 「行政에 의한 實體的 監督」<sup>49)</sup>으로서 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보험감독법)의 제6장 「外國保險事業者」편에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VAG §105 ~§111)

#### 가) 시장접근에 대한 규제

외국보험사업자의 설립면허에 대한 신청의 결정은 다음 사람에게 의해 행해진다<sup>50)</sup>(VGA §106)

EU 가맹국내에 본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BAV(연방보험제도 감독청) 이들 사업자는 법적요건이 합치되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다.

EU 가맹국내 본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연방재무부장관.

장관은 BAV 가 「보험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면허를 거부할 법적이유가 없다고 하는 의견을 확인한 후 곧바로 면허를 줄 수가 있지만 그러한 것이 의무는 아니다. 또한 외국사업자는 다음의 특별요건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EU 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사업자는 그 모국에서 인가를 받은 법적형태로 설립하지 않으면 안된다<sup>51)</sup>.

EU 지역내 또는 EU 지역외의 본점이 있는 외국사업자는 독일국내에서 인수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이 모국에서 인수면허가 있을 것 및 실제로 어떠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여, 이 증명은 모국의 감독관청이 발행한 증명서의 제출에 의한다.

둘째, 사업자는 독일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또 총관리인으로서 독일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총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대리인은 독일국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독일어에 대단히 능숙하고 또 독일법 및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제정세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업자가 독일에서 면허를 얻은 경우 사업자는 그 영업소를 통해서만 독일에서 보험사업을 인수할 수가 있다.

이 규정의 예외는 EU 지역내에 본점을 갖고 있는 그 독일에서의 영업소가 자동차를

49)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前掲書, ドイツ 連邦共和國 (西ドイツ)編, 平成元年 5月 P. 9.

50)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前掲書, P. 18.

51)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前掲書, PP 23~24.



제외한 운송일반의 보험인수만을 하는 외국보험사업자 및 공동체 공동보험의 공동보험자이다. 또한 재보험 전문사업자는 면허취득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원칙에 대해서도 예외가 된다.

한편 재무적인 요건으로서 외국사업자에 대한 특별요건은 외국사업자의 본점이 EU역내인지 역외인지에 따라 구별이 있다<sup>52)</sup>.

a) EU 역내에 본점이 있는 사업자는 독일 사업자에 대하는 것과 똑같은 재무적 조건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그 외국사업자는 그 사무소(본점)가 있는 나라의 감독관청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b) EU 역외에 본점을 두는 사업자는 설립시에 행하는 사업규모에 근거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유자산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사업개시시의 요건으로서 정액 및 변동공탁금을 준비할 것을 약속해야만 하는데, 정액공탁금(定額供託金)은 다음과 같다.

- 배상책임, 신용 및 보증보험종목의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는 DM 900,000
- 상해, 육상수송용구,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수송중의 화물, 화재 및 자연재해 등 각종 재정상의 손실보험종목의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는 DM 675,000
- 우박, 서리, 기타 재산손해 및 소송비용의 보험종목의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는 DM 450,000
- 생명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DM 600,000
-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정액의 금액은 불필요하다.

또한 변동공탁금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금액은 전 사업년도의 영업보험료에서 EU내에 본점을 둔 재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영업보험료의 50%한도)을 공제한 액수에 의해 정한다<sup>53)</sup>. 이 금액의 50%가 변동공탁으로서 요구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의 변동공탁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변동공탁금은 지정된 독일의 금융기관 또는 독일 국내의 외국금융기관 영업소에 기탁하여야 한다. 변동공탁금은 그밖에 요구되고 있는 규제자산과 구분된다.

52) 日本損害保險協會, 前掲書 PP 25~26

53) 日本損害保險協會, 前掲書 P. 28.

### 3.3 프랑스의 保險去來 障壁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사업자는 감독을 받게 되지만 프랑스에서는 공제조합과 장래를 대비하는 저축조직은 法典 L310-1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본점이 EU 역내에서 재보험사업만을 영위하는 프랑스 또는 외국의 보험사업자는 감독을 받지 않는다. (L321-1)

#### 3.3.1 市場接近上의 制限

##### 3.3.1.1 設立上의 制限

프랑스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프랑스에서 설립된 보험사업자만이 원수 보험 또는 再保險事業을 영위 할 수 있다.<sup>54)</sup>

외국보험사업자의 경우 프랑스에 있어서 본적지의 선정과 프랑스의 재판관할의 승인과 프랑스에 본적이 있는 총대리인의 지명(R 321-2, 7, 8, 9)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보험사업자라 할지라도 EU역내의 보험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재정장관은 프랑스 국내보험자의 총대리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R321-7), EC역외의 보험사업자의 총대리인의 승인에 있어서는 동장관의 자유재량이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요구하는 상호주의가 충족되지 않는한 외국보험사업자의 진출이 곤란한 원인은 여기에 있다.<sup>55)</sup>

##### 3.3.1.2 財務上의 規制

자본금의 경우 EU역외의 보험사업자는 해당구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해당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국무관청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랑스의 최저 guarantee fund의 1/2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증명서의 제출과 EU의 총괄 solvency margin 검증에 따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uarantee fund의 1/4을 공탁해야만 한다.

공탁금의 경우 외국보험사업자의 공탁의무는 1962년 없어졌지만 외국보험사업자는 해당국에 프랑스 보험사업자가 진출할 때에 공탁의무가 있는 경우는 소위 상호주의의 원칙

54)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 海外調査報告書  
フランス 編, 平成元年 3月. P.18 .

55)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前掲書. P.23.

에 따라서 공탁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L321-2)

또한 EU역외의 보험사업자의 경우 과거 최근의 3회계년도(3년 경과하지않은 경우는 완료된 회계년도만으로)의 대차대조표, 총영업계산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sup>56)</sup>

결국 EU역외의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해서 면허의 부여가 자유재량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참작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만을 참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3.3.2 業務活動上の 制限

#### 3.3.2.1 他業의 制限

국가감독을 받는 보험사업자는 法典 R321-1에 규정된 보험사업과 그로부터 직접발생하는 활동이외의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R322-2)

그러나 R322-2의 후단에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後者의 계산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브로커와 대리점 또는 재보험과 달리 보험계약자가 원격지에 있다던지 특수보험의 경우 보험사업자간에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한 보험사업자에게 그 보험계약의 권리, 의무를 전부 매도하여 그 담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보험계약의 매매를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3.3.2.2 生損保 兼營의 禁止

프랑스는 보험사업상호간에 대한 특정종목분리영업의 원칙<sup>57)</sup>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생명유사보험 포함)은 손해보험과 겸영금지로 되어 있어 同一企業에서는 동시에 겸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R321-1, R322-1, R321-3, 에서는 부분적으로 동류의 사업을 동일기업에서 영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정확한 법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3.3.2.3 財務上の 監督

재무상 감독의 목적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와 자산의 감독인바, 부채의 경우 지급능력과 보증기금에 대한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sup>58)</sup>

56)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前掲書, P. 26.

57)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前掲書, P. 32.

지급능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며 EU역외의 손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자의 서로 다른 본국의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EU역외의 보험사업자는 보증준비금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다른 EU 회원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사업규모에 따른 지급능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보증기금은 EU역내 기업에게는 법정지급능력의 1/3로 구성되어 있으나, EU역외의 보험사업자의 보증기금에 있어서는 영위하는 보험사업종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sup>59)</sup>

생명보험사업의 경우 : 지급능력의 1/3 이상으로 40만 ECU 이상

손해보험사업의 경우 : 지급능력의 1/3 이상으로 EU역내 기업의 최저보증기금의 1/2 이상

### Ⅲ. 맺음말

격심한 보험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보험선진국의 障壁 및 規制狀況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자유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로 非美國界 보험업자의 설립의 자유를 포함한 市場接近 및 業務上의 內國民 待遇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차별적 규제보다는 社會·文化的 環境을 이해하여야만 접근이 용이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국가인 일본은 1996년부터 시행된 新保險業法에 의하여 보험 관련 자유화 및 개방화가 현저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장성의 通達과 같은 규칙도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EU의 경우 EU의 통합과 맞물려 극심한 변화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EU 제3지침은 自由化 및 規制緩和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보험감독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相對國의 보험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外國保險制度下에로의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진출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

58)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前掲書, P. 35.

59)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前掲書, P. 37.

서의 고려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첫째, 각국의 보험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規制와 制度的인 환경은 물론 慣行 및 社會·文化的 環境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둘째, 制度的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별기업의 企業內部的 內實化 및 技術開發 (마케팅, 자산운용, 상품 등)이 요구된다. 相對企業과의 差別化만이 진출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진국으로의 市場進入이 어렵다면 우리 기업이 많이 나가있는 국가로의 進出이나 보험시장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을 먼저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1. 김세원 외 7인, 「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비봉출판사, 1995.
2. 김용일 외 1인, UR 最終協定解説, 韓國貿易經濟, 1994.
3. 박찬일, 「금융제도의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1995.
4. 保險開發院, 主要國의 保險資産運用 規制 및 現況, 調查研究資料 NO. 46, 1996.
5. 보험개발원, 海上積荷保險 Cross-Border 許容 以後의 效果分析 및 向後對應 戰略 Insurance Forum 제12호, 1996.
6. 생명보험협회, 「구미각국의 생명보험사업에 관한 감독규제」각국편, 1994.
7. 성대규, 「保險市場 自由化 計劃」, 손해보험, 대한손해보험협회, 1995.
8. 禹營洙, 서비스 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9. 李長榮, 金融서비스 關聯障壁,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10. 李漢德, 「OECD 加入과 韓國의 保險産業」, 韓國金融學會 추계특별심포지움, 1995.
11. 채욱, 「보험산업의 국제화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12.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 海外調査報告書 ドイツ 連邦共和國 (西ドイツ)編, 平成元年 5月
13.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 海外調査報告書 フランス編, 平成元年 3月.
14.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海外調査報告書 米國編, 平成 3年.
15. 日本損害保險協會 業務開發室, 保險監督法制 海外調査報告書 イギリス編, 平成元年
16. 日本 新保險業法
17. 日本 新保險業法 施行令
18. 日本 新保險業法 施行規則
19. GATT, GATS, MFN/FA II-A1 B.
20. Mario A. Kakabadse, "The Uruguay Round and the Liberalization of Trade in Insurance Service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17 (No. 63, april 1992)
21. Skipper, Harold D, "Protectionism and Provision of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 March, 1987.
22. Takash : Ochi, "The Fundamental Issues in Liberalisation of Insurance", 保險學會誌, 第 38輯, 1991.
23. U.S. Treasury, 「National Treatment Study 1990」

## Abstract

### A study on the insurance barriers of the leading countries in OECD.

Yun, Yeung-jin

When the international insurance market is expected to change rapidly, the insurance barriers of some key countries in OECD have been studied.

Many foreign insurers within the U.S. can enjoy national treatment in their market access,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but it can be viewed as an easy country to access and operate when we understand socio-cultural surroundings more deeply than their laws and regulations

Japan, our neighbourhood is seeking the liberalization in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by the new insurance law in 1996. However, its main barriers are the official gazette and rule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EU, after the intergation, is running after the supervision of home country, to say nothing of the liberalization and the deregulation.

The particular protectionist measure might be justified by the corresponding rationale.